

6.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027號 1990. 6. 22 公布.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5(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 특례) ①법 제40조의6 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계의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을 포함한다.

②법 제4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③법 제4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386\text{만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frac{\text{사업연도 월수}}{12}$$

④법 제40조의6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이라 함

은 과세기간별로 386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⑤법 제40조의6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총액중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text{영농조합법인으로 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times \frac{\text{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농지소득외의 소득금액}}{\text{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⑥법 제40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집행에 규정된 농지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

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

⑦법 제40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은 농지를 현물출자하기 전에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후 출자지분양도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추징하되, 추징할 세액은 당해 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에 총출자지분에서 3년 이내에 양도한 출자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법 제40조의6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함은 추징할 세액에 제1호의 기간에 대한 제2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된 율

⑨법 제4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와 그 방위세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법 제40조의6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법 제40조의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

2. 당해 농지의 등기부등본 1부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

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9조제6호에서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 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말한다.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제33조의5 제1항에 규정된 농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것을 제외한다.

③법 제6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를 말한다.

제55조의11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중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을 “대체취득자산을”로 하며, 동조 제8항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사원용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용한 토지 등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원용주택(이에 부수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주택”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 등

③법 제67조의1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부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대체취득자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1. 공장 및 기계장치
2. 사원용주택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어민지원시설

제58조제3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중 “하남공업단지를”을 “하남공업단지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제3공단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 改正理由 ▷

5. 8 不動産投機抑制對策의 施行을 위하여 法人의 不動産讓渡所得에 대한 特別附價稅 減免範圍를 縮小하고, 農漁村發展綜合對策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管農組合法人·委託管農會社 및 農漁村振興公社에 대한 稅制支援에 필요한 사항을 定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管農組合法人の 所得중 法人稅가 非課稅되는 農業外所得의 범위를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農家副業所得限度額인 386萬圓에 組合員數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함(令 第33條의5 第3項).

나. 管農組合法人の 農業外所得에서 組合員이 支給받는 配當所得중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配當所得의 限度額을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所得稅 非課稅 限度額인 386萬圓으로 함(令 第33條의5 第4項).

다. 附加價値稅 등이 免除되는 管農用役을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하여 設立된 委託管農會社가 제공하는 用役으로 하고, 農地를 讓渡 또는 讓受하는 경우에 特別附價稅 등이 減免되는 法人을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振興公社로 함(令 第33條의6·第48條第3項·第49條第3項 및 第58條第3項).

라. 法人이 業務用으로 2年 이상 사용한 土地 등을 다른 業務用 固定資產을 對替 取得하기 위하여 讓渡할 경우 特別附價稅를 免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年 이상 계속하여 稼動한 工場을 讓渡하고 다른 工場·機械裝置를 代替取得하는 경우에만 特別附價稅를 免除하도록 하고, 기타 工場외의 土地 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特別附價稅를 免除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5條의11 第1項).

〈법제처 제공〉